

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
-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(필요성)

-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밴)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운영의 효율성, 전문성 확보

다. 위탁운영 개요

- 1) 위탁사무 :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 -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접수, 자격심사 및 확인
 -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 -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입금 관리
 - 특별교통수단 운전종사자 관리 및 교육
 -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
- 2) 위탁시설 : 특별교통수단 19대(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)
 - 카니발 13대, 스타렉스 6대

<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>

- ◇ 수탁기관 : 구미시설공단(일반직 1, 운전원 19, 사무보조 1)
- ◇ 이용대상 :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 /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
- ◇ 이용요금 : (관내) 기본 1,100원/5km, 최대요금 3,000원
(관외) 기본 1,100원/5km, 최대요금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
- ◇ 이용방법 : 즉시콜 및 예약콜(1~3일전) 병행
- ◇ 이용지역 : 관내 또는 경북·대구, 김천KTX역(병원진료 목적)
- ◇ 이용차량 : 특별교통수단 19대

라. 위탁기간 : 2023년 4월 ~ 2026년 3월(3년)

*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 평가 후 위원회 심의 거쳐 재위탁 가능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,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바. 위탁방법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사. 위탁 소요예산(년)

[단위 : 백만원]

계	인건비	물건비	경상이전	자본적지출, 분담금
1,179	870	144	87	78

※ 2022년 운영비 기준(대당 연 62백만원 정도)

사진대지

☐ 특별교통수단 차량



관 계 법 령

□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

- ⑦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⑨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

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)

-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
2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
3.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

-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시장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소 관 부 서		대중교통과
입 안 자	담 당	한 상 훈
	담 당 자	김 현 지 (480-2905)